

## 공정거래 자율준수 10대 강령

1. 다이소 전 임직원은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다이소 전 임직원은 협력회사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거래에 있어 공정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협력회사와 모든 거래는 협력회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서면으로 체결하고 진행한다.
4. 다이소 전 임직원은 협력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협력회사에 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않으며, 부당한 비용을 협력회사에 부담시키지 않는다.
6. 협력회사가 납품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지 않는다.
7. 협력회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는다.
8. 협력회사에 부당한 인력파견을 요청하지 않는다.
9. 각종 상품 및 행사를 광고함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10. 모든 광고내용은 고객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한다.